

35. 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년 9월 27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교통국장)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4일
- 상정일자
 - 대구광역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3년 10월 13일) :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대영 교통국장)

□ 제안이유

-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대중교통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와 「대구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를 일원화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을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로 변경
-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제7조)
-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마을버스 운행계통, 운행노선 범위, 운행시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제12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 등록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재정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중단,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 제17조)
- “대구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 폐지 규정(부칙 제2조)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익)

- 본 개정조례안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하여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원화하고,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추진과 한정면허 운송사업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과 제23조제2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대상자 선정사항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행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대구시에서는 올해 10월부터 혁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개정 현황

구 분	2014. 1. 28.	2017. 12. 26.	2023. 4. 18.
개정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념 신설	·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범위를 기존 농·어촌에서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 규정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도입 범위를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개정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시범사업

○ 사업대상지 : 혁신도시(의료R&D지구)

- 운행노선 : 혁신도시(의료R/D지구) ~ 도시철도(울하연호역) ※ 한정면허 공고('23. 7월)
- 사업기간 : '23. 10. ~ '24. 6.(9개월)
- 사업비 : 2억원(용역비 1.9 / 교통공사 운영비 0.1)
- 운영방법 : 출퇴근시간(45인승 4대 / 1일 16회) / 그 외(소형버스 1대 / 탄력운행 1일 10회)
- 수혜대상 : 입주기업 68개사 2,300여명 * 1일 평균이용(320명 정도)
- 운임요금 : 1,250원(도시철도 환승 연계)
- 주관기관 : 대구교통공사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으나 2014년 법적 개념 도입 이후 다소 늦게 조례 반영이 되는 만큼,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 한편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선정과정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기준과 절차 마련을 통해 불공정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사업 이후에도 운송사업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후 평가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음.

- 또한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등록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한정면허 운송사업 및 마을버스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고취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재정지원 타당성과 지원자금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재정지원 이후에도 보조금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지원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지원목적외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재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p>○ 현재 시행중인 혁신도시 수요응답형 운송 시범사업 공고문을 보면, 수요응답형 운송 사업 관련 규정이 없는 개정 전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는지 답변바람.</p>	<p>○ 혁신도시 수요응답형 운송 시범사업은 출퇴근시간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완벽한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고, 넓은 의미의 한정면허 운송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시범사업은 상위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p>
<p>○ 개정조례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기존 버스노선과 버스 운송 경영 개선 문제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내실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p>	<p>○ 조례 개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실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기존 버스노선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p>○ 한정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한 사업자 선정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재정지원 등 사업전반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및 감사를 실시하기 바람.</p>	<p>○ 그렇게 하겠음.</p>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